

2000. 5. 19(금)
제60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업도시위원회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0. 5. 10 제천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0. 5. 10
다. 상 정 일 자 : 2000. 5.16(제60회임시회산업도시위원회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가. 제안사유

농어촌정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제천시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에 설치한 마을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명시
 - 세입재원의 명시 및 세출예산의 용도 규정 명시
 - 특별회계운영 : 일반회계의 예에 의거 처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용태)

▣ 법 적 검 토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을 보면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 환경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에 의거 시보에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친후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 행정적 검토

- 생활환경정비사업 수익금은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촌정비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우리시 관내에도 이미 3개소의 문화마을이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453백만원)을 타목적에 유용·전용할 수 없게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투자 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박연길, 민경완 의원)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나. 답변요지 (농업축산과장)

수익금 전액을 해당 문화마을 조성 지역에 재투자할 것임.

5. 소수의견

“ 없 음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 부. 끝.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9
----------	-----

제출년월일 : 2000년 4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법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태조왕건촬영장 주차장등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요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3조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별표2]를 신설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부과한다⇒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차량 주차요금 감면규정 정비
- 제5조: 주차장법개정으로 완화된 민영노외주차장 안내표지 설치규정 삭제
- 제6조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수탁료납부방법중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제7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를 삭제함
- 제10조 : 상위법 보다 과다한 규제사항 정비(벌칙⇒조치)
- 제12조 : 노외주차장 설치는 종전 신고제도에서 통보제도로 개정되어 관련내용 정비
- 제15조
-건축법시행령개정 및 주차장법시행령개정으로 관련조문 정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3.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붙임 1.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끝.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으며,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본문중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부과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동조제3항제1호중 “부과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제2호의 “부과할 수 있다”를 “받을 수 있다”로, 제3호의 “부과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차량중 장애인 동승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제5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②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범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중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음에 “다만,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1항중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9조중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를 금한다.”를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벌칙”을 “조치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을 “노외주차장설치신고 및 기준등”을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기준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은 규칙 제5조와 제6조를 적용하며,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제12조제2항중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규칙 제6조제5항에 의한”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중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동주택의”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의”로하고, 동조 제1호중“(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를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로하며, 동조 제2호중 “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은 3세대당1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중 월 정기 주차요금난의 “(노상주차장은 불인정)”을 삭제한다.

[별표2]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 分		당일(1회당요금)	체 류(주.야간)
중대형버스(16인승이상)		3,000	6,000
소형승용차(15인승이하)		1,000	2,000
화물차	4톤 이상	3,000	6,000
	4톤 미만	1,000	2,000
이 루 차		500	1,000

<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관광지 주변등 별도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1일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입장시 선징수 한다.
3.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은 아래와 같다.

○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②(생략) 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 2. 주차수요밀집시간 주차시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4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p>④(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50 <p>2~5. (생략)</p> <p>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생략) ②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제2호서식에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으며, 주차 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 ③공영주차장----- -----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받을 수 있다. 2. ----- ----- -----받을 수 있다. 3. ----- ----- -----받을 수 있다. <p>④.(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차량증 장애인 등승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p>2~5. (현행과 같음)</p> <p>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담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 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③(삭 제)</p>
<p>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p>	<p>④(삭 제)</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 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 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 다.</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 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사 유자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 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 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관리수탁자 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격으로 하여 3개월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p>	<p>②----- ----- 다만,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④ (생 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결정 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 하여야 한다.</p>	<p>제7조 (삭 제)</p>
<p>②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담해 주 차장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 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1~3. (생 략) ②(생 략) <u>제9조(이용제한)</u>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 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 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 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u>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u> ①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 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한다. ③(생 략) ③제2항의 안내표지판의 내용은 제한차종,제한 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u>제12조(노외주차장설치신고 및 기준등)</u> ①노외주 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법 제12조제1 항 및 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 획기준 및 구조와 설비기준은 규칙제5조와 제 6조를 적용하며,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 에 의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및 자 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 공시설의 지상, 지하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경 우에 한하여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2.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u>제9조(이용제한)</u> ----- <u>영주차장의</u> ----- ----- ----- ----- ----- ----- ----- <u>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u> ①공영주차장 ----- ----- ----- ----- <u>주차를</u> <u>금지할 수 있다.</u> ②(현행과 같음) ③----- ----- <u>조치등</u> ----- <u>제12조(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등)</u> ①노외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은 규칙 제5조와 제6 조를 적용하며,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및 자 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한다. ②규칙 제6조제5항에 의한 ----- ----- ----- -----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영 제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시설물과 <u>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중주택)</u>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의 시설물은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한하여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을 적용한다.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다.)</p> <p>2. 단독주택은 3가구당 1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1세대로 산정한 대수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중 많은 대수를 설치한다. (단, 가구당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p>	<p>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p> <p>----- 건축법시행령 별표1</p> <p>제1호의 단독주택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의 -----</p> <p>1. -----</p> <p>-----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p>2. -----, 단세대주택은 3세대당 1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 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 (제3조 제1항 관련)			
급자구분	1회 주차요금 (1구획 10분당)	1 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노상주차장은 별인정)	금지별	1회 주차요금 (1구획 10분당)	1 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300원	12,000원	- -	1급지	300원	12,000원	- -
2급지	200원	8,000원	75,000원 56,000원	2급지	200원	8,000원	75,000원 56,000원
3급지	100원	4,000원	45,000원 30,000원	3급지	100원	4,000원	45,000원 30,000원

<비고>

-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정수한다.
- 매주 일요일은 무료개방(휴무)하며 주간요금의 징수시간은 09:00-20:00까지로하고 나머지는 야간으로 본다. 야간의 요금징수는 주차질서의 확립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때 까지 유보하되 징수시간 종료 1시간전부터는 주차요금을 선정수 할 수 있다.
- 급지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신설등으로 인한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1급지 : 노상1지구, 노상2지구
 - 2급지 : 노상5지구, 노상6지구, 노상7지구, 노상8지구, 노상9지구, 중앙시장지구, 용두천1지구, 용두천2지구, 용두천3지구, 역전주차장, 중앙교차로, 명동교차로, 역전교차로, 기타1,3급지에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
 - 3급지 : 노상3지구, 노상4지구, 용두천4지구, 용두천5지구, 용두천6지구, 용두천7지구, 명동주차장, 의병교차로
- 매 단위의 주차시간중 10분 미만의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10분으로 적용한다.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산정시는 각 급지별 주간요금과 야간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비고>

-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정수한다.
- 매주 일요일은 무료개방(휴무)하며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09:00-20:00까지 하고 나머지는 야간으로 본다. 야간의 요금징수는 주차질서의 확립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때 까지 유보하되 정수시간 종료 1시간 전부터는 주차요금을 선정수 할 수 있다
- 급지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신설 및 기타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1급지 : 노상1지구, 노상2지구
 - 2급지 : 노상5지구, 노상6지구, 노상7지구, 노상8지구, 노상9지구, 중앙시장지구, 용두천1지구, 용두천2지구, 용두천3지구, 역전주차장, 중앙교차로, 명동교차로, 역전교차로, 기타1,3급지에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
 - 3급지 : 노상3지구, 노상4지구, 용두천4지구, 용두천5지구, 용두천6지구, 용두천7지구, 명동주차장, 의병교차로
- 매 단위의 주차시간중 10분 미만의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10분으로 적용한다.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산정시는 각 급지별 주간요금과 야간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별표2)</p> <p style="text-align: center;">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5px;">(제3조제1항 관련)</th></tr> <tr> <th>구분</th><th>당일 (1회당요금)</th><th>체류 (주.야간)</th></tr> </thead> <tbody> <tr> <td>중대형버스 (16인승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3,000원</td><td style="text-align: center;">6,000원</td></tr> <tr> <td>소형승용차 (15인승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tr> <tr> <td rowspan="2">화물차</td><td style="text-align: center;">4톤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3,000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톤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tr> <tr> <td>이 름 차</td><td style="text-align: center;">500원</td><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1.이 주차요금은 관광지주변동 별도로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p> <p>2.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1일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입장시 선징수 한다.</p> <p>3.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은 아래와 같다. ○태조왕건촬영장 주차장</p>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당일 (1회당요금)	체류 (주.야간)	중대형버스 (16인승이상)	3,000원	6,000원	소형승용차 (15인승이하)	1,000원	2,000원	화물차	4톤이상	3,000원	4톤미만	1,000원	이 름 차	500원	1,000원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당일 (1회당요금)	체류 (주.야간)																			
중대형버스 (16인승이상)	3,000원	6,000원																			
소형승용차 (15인승이하)	1,000원	2,000원																			
화물차	4톤이상	3,000원																			
	4톤미만	1,000원																			
이 름 차	500원	1,000원																			